

『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22일

제25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지원국장 이창형

나. 제안이유

상위법이 폐지·삭제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변경·개정하고 「지방자치단체
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기금관리공무원
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령 개정(안 제1조, 제2조제5호, 제2조제6호, 제2조제13호, 제20조)

나. 기금의 존속기한 5년 연장(안 제3조의2)

(현행) 2021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6년 12월 31일

다. 명칭 변경(안 제5조제5호, 안 제5장)

(현행)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→ (개정) 벤처투자조합

라. 기금관리공무원 변경(안 제27조제1호, 제2호)

(현행) 기업지원과장 → (개정) 업무담당과장

(현행) 기업지원담당 → (개정) 업무담당계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,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완료(21.8.20.),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변 상 용

○ 본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, 상위법의 폐지·삭제로 인한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-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·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7. 토 론 요 지 : 생 략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